

개인투자조합 관련 회계 및 세제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사 소개



강 사 명	박종대
소 속	삼화회계법인
주요경력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경영지도학과 석사 2021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엔젤투자 지원) (前) KPMG, 한불증권(심사, 기획, 증권부문) (前) 한국벤처투자 자펀드(모태펀드) 회계감사 대표전담인력 (前) 중기부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관리·감독 전문위원 (前) 엔젤투자 매칭펀드 자문 위원 (前)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기업 회계 실사 책임전담인력 (現) 농식품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 대표전담인력 (現) 한국모태펀드의 엔젤 모펀드 출자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모태펀드 출자 개인투자조합의 사무수탁업무 대표전담인력
연 락 처	010-5335-3282 jd3282@daum.net

- Chapter 1 엔젤투자자의 개념
- Chapter 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
- Chapter 3 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
- Chapter 4 투자확인서 발급
- Chapter 5 Tax의 개관
- Chapter 6 벤처(중소)기업의 회계
- Chapter 7 투자조합의 Tax 및 회계
- Chapter 8 벤처투자와 관련된 ISSUE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젤의 개념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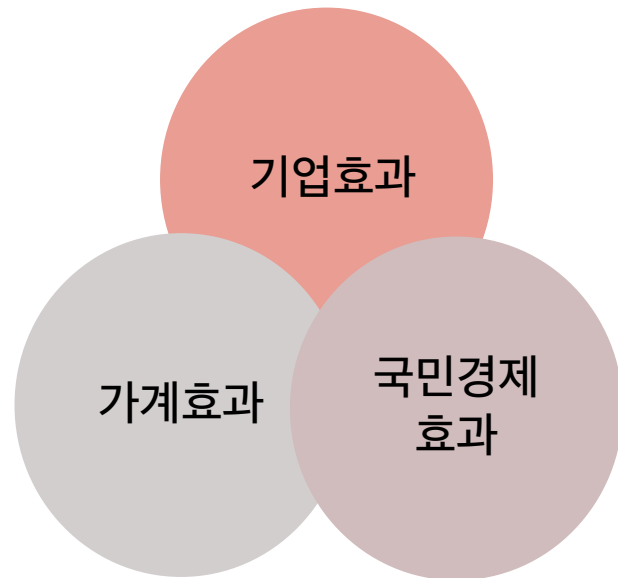
엔젤이란?

엔젤(Angel)이란 사업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창업자에게 부족한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노하우를 지원하여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이익배당이나 주식양도차익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

특징

- (1) 엔젤은 비교적 금전적 여유가 있고 기업경영에 경험 있는 개인투자자
- (2) 초기단계에는 엔젤이, 성장단계에는 벤처캐피탈이 자금을 지원
- (3) 엔젤은 벤처캐피탈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 (High Risk High Return)

엔젤투자의 경제적 효과



1

- (1) 기업 자금지원
- (2) 기업 투명성 제고
- (3) 기업 성장성 제고
- (4) 사업 다각화 촉진

2

- (1) 포트폴리오 다각화
- (2) 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
- (3) 자금운용 건전화

3

- (1) 지역경제 활성화
- (2) 경제 활성화 촉진
- (3) 자본시장 활성화

Chapter 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절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인투자조합 결성

- ✓ 2인 이상의 개인들로 출자 (특정요건의 법인 *1도 출자 가능)
- ✓ 출자액 총액 1억원 이상
- ✓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
- ✓ 조합원수 49인 이하 (사모의 방법)
- ✓ 존속기간 : 5년 이상
- ✓ 업무집행조합원(GP)
 - 출자금총액의 3% 이상 출자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약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 ✓ 출자금 총액 20억원 이상
 - 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신탁업자에 위탁

개인투자조합 등록신고

1. 결성계획서 제출
 - 승인 시 고유번호증(관할세무서) 발급
2. 조합 등록신청서 제출
 - 조합 규약 사본
 - 조합원 명부
 -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
 -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 증명서류
 - 조합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 (제출일로부터 2일 전에 발행)
 - 고유번호증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3. 개인투자조합 등록원부 발급

개인투자조합 사후관리

- ①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조합의 결산서 제출 (감사인의 감사의견서 *2) 첨부)
- ② 조합의 투자기업·투자금액·투자일자 등을 기재한 자금운용현황 자료를 제출
- ③ 조합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14일 이내)
 - 조합규약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GP의 명칭 및 주소
 - 조합원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조합의 존속기간

*2) 개인투자조합의 수익 및 투자 현황 등 자금 운용 현황 자료로 결산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

-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거나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조합(결성 후 3년이 지난 개인투자조합은 제외)의 경우

*1) 창업기획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 투자 :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 프로젝트투자 /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 /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 등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2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절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_계속

※ 개인의 경우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이 필요 [시행 2023. 3. 21.]

3.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전문개인투자자일 것

나.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

다.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창업기획자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벤처투자회사
- 2)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3)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라.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절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_계속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투자
- 창업기획자가 GP인 경우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자(설립후 3년 이하)에 투자
- 상장사(코넥스 시장 제외) 투자 : 10% 한도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절차 - 계속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및 운영 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그 개인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단,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의 모집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절차 - 계속

*1)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행위

✓ 일반 유흥 주점업

✓ 무도 유흥 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다만,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은 제외한다)을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나.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절차 - 계속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 또는 조합의 재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등을 매입하는 행위 *2)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마.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으로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

1) 개인투자조합

2) 벤처투자조합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6)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절차 - 계속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 이행의 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행위. 다만,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신용공여 행위는 제외한다.
5. 개인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6.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7.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8. 그 밖에 개인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절차 - 계속

*2)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게 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개인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교환·이전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절차 - 계속

2. 제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 또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요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자로 한정한다]이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절차 - 계속

등록의 취소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5.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7.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운용한 경우
8.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절차 - 계속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Chapter 3 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

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 종류

I.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한 금액의 10%~100%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II.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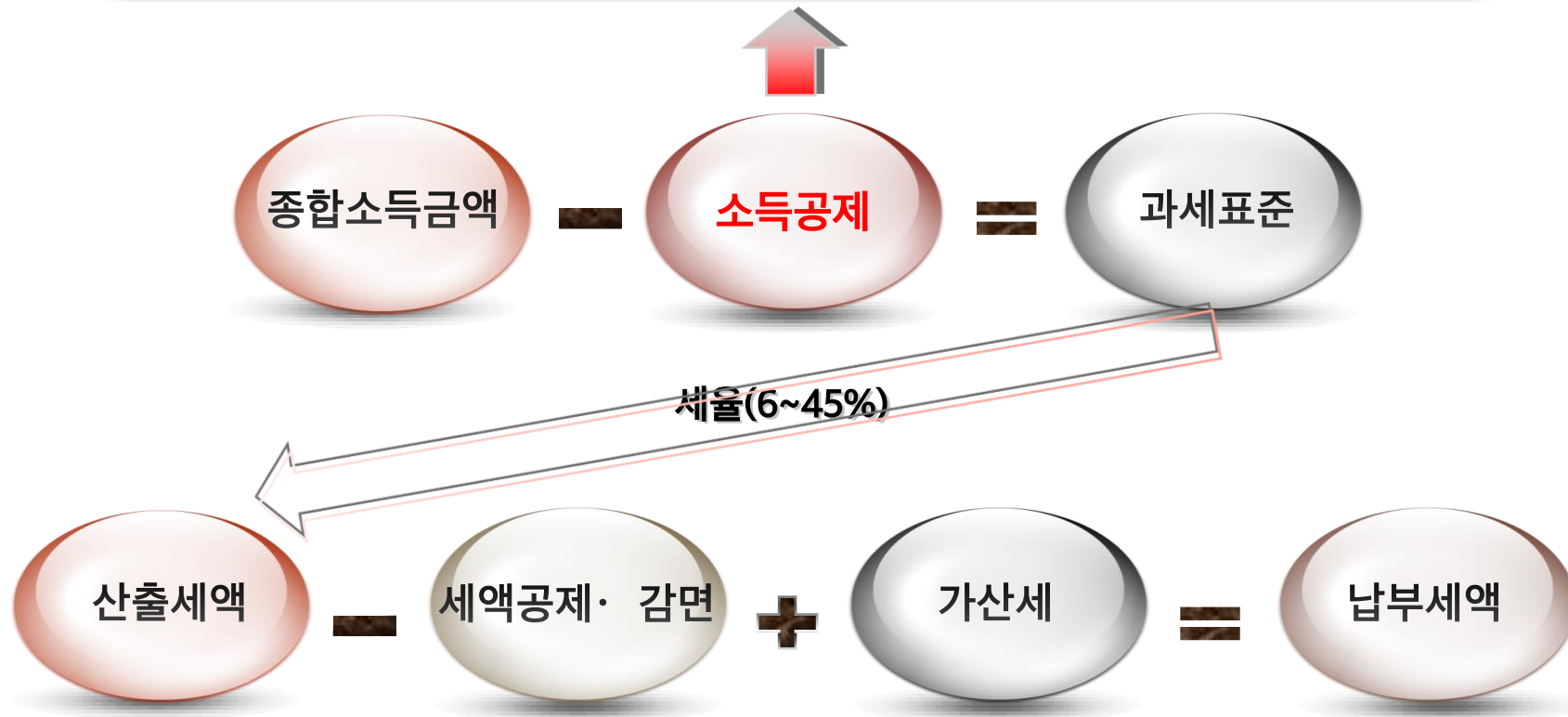
주식양도차익 100%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4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Chapter 3 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

소득공제의 개념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 엔젤투자 소득공제)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3 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

종합소득세율(소득세법 제55조)_2023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3 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 금액의 10%
2. ①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 당시에는 상기 ①, ②, ③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기 ①, ②, ③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 (시행일 2018.1.1)

→ 3천만원 이하 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분 70%, 5천만원 초과 분 30%

*1)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상기 ①, ②, ③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 공제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함

*3) 구주 취득은 제외 *4) 2025년 12월 31일까지

※ 조특법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2천 500만원 (①, ② 및 ③ 제외)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3 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속

1

출자(10%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소득공제)

(계약기간 3년 이상, 통장에 의한 거래,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
→ 거주자 1명당 3천만원 한도

3

투자(30~100% 소득공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 *2)

4

투자(30~100%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에 투자 *2)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 *3) (30~100% 소득공제)

*2)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의 기업에 투자

- ① 벤처기업
- ②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③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투자직전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
- ④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1)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 :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지원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3) *2)의 ②, ③, ④의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봄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속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 투자조합)

법률명	투자조합 명칭	해당 기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인투자조합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금융위원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문투자조합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식품투자조합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속

소득공제신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소득공제신청서에 투자조합관리자 등으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퇴직 또는 폐업의 경우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②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속

추징사유(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함

- ① 벤처투자조합 등 및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
- ②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 포함)
- ③ 벤처기업 등의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취득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

추징 제외 사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10항)

- 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 ②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
- ③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도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됨(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속

(사례1)

거주자 홍길동이 2023년 6월 1일 벤처기업 A에 1억원을 투자하고, 2023년 12월 1일에 벤처기업 B에 5천만원을 투자한 경우,
(거주자 홍길동의 2023년 종합소득금액은 6천만원, 2024년 및 2025년 종합소득금액은 8천만원으로 가정, 소득세율은 2023년~2025년까지 동일하다고 가정)

→ 거주자 홍길동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3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거나,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23년)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5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가능 (3개 과세연도 중 1개 과세연도를 선택 가능)

① 2023년 종합소득신고 시 소득공제를 선택하였을 경우

소득공제금액 : $(1.5\text{억원} - 5\text{천만원}) \times 30\% + (5\text{천만원} - 3\text{천원}) \times 70\% + 3\text{천만원} \times 100\%$
= 74,000,000원

소득공제의 한도 : $6\text{천만원}(2023\text{년 종합소득금액}) \times 50\% = 3\text{천만원}$

과세표준 : $6\text{천만원}(종합소득금액) - 3\text{천만원}(소득공제금액, 소득공제의 한도 중 작은 금액)$
= 3천만원

→ 산출세액 : 공제전 8,640,000원 / 공제후 3,240,000원 / 공제혜택 5,400,000원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속

(사례1)_계속

② 2024년 또는 2025년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공제를 선택하였을 경우

소득공제금액 : $(1.5\text{억원} - 5\text{천만원}) \times 30\% + (5\text{천만원} - 3\text{천원}) \times 70\% + 3\text{천만원} \times 100\%$
= 74,000,000원

소득공제의 한도 : $8\text{천만원}(2024\text{년 또는 } 2025\text{년 종합소득금액}) \times 50\% = 4\text{천만원}$

과세표준 : $8\text{천만원}(\text{종합소득금액}) - 4\text{천만원}(\text{소득공제금액, 소득공제의 한도 중 작은 금액})$
= 4천만원

→ 산출세액 : 공제전 13,440,000원 / 공제후 4,740,000원 / 공제혜택 8,700,000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속

(사례2)

1과세연도에 2회 이상 투자한 경우,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2023년 6월 1일에 투자한 1억원 중 7천만원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2024년 또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 불가,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하여야 함

② 2023년 6월 1일에 투자한 1억원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12월 1일에 투자한 5천만원은 2024년 또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 불가,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하여야 함 (상담사례 2018.06.25)

→ 불가, 투자 건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 2020년 투자한 전체내역에 대한 공제시기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상담사례 2022.04.20)

→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사전-2022- 법규소득-1255, 2023.05.10.)

** 거주자가 동일 과세연도 내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 다른 투자처에 각각 출자 및 투자를 한 경우 투자처가 다른 각 투자분마다 공제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42 [법령해석과-3484] , 2016.11.01)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3 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속

**** 소득공제 대상 투자 : CB 또는 BW 포함 여부**

벤처기업앞 투자 소득공제 가능여부	답변일자 : 2013-01-11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6월 비상장 벤처기업앞 신주인수권부 사채 인수 - 현재 주식 인수기한 미도래로 주식인수 안하고 사채로 보유중 2.질의사항 이 경우 2012년 소득공제 가능여부 질의합니다	
● 답변	
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지 않는 사채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재산46014-281, 2000.10.4.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u>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함.</u>	

2024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 안내(2024.12.) - 국세청 발간

○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의 범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한 금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3 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계속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2018.4.18)	[세목]	소득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034		
[제 목]			
무담보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채를 인수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인수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사채를 상환받은 경우 같은 법 제2항제3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3 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

양도소득세의 개념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 대상자산 : ①토지 또는 건물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및
소액주주 장외거래분, 비상장법인 주식 ④기타자산 ⑤파생상품등 ⑥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과세표준

세율(구분적용)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

가산세

=

납부세액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제104조)

구분	양도소득세율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30% 2) 상기 이외 -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 소액주주의 장내양도(K-OTC시장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포함)는 비과세	1) 중소기업의 주식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범위

대주주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이상인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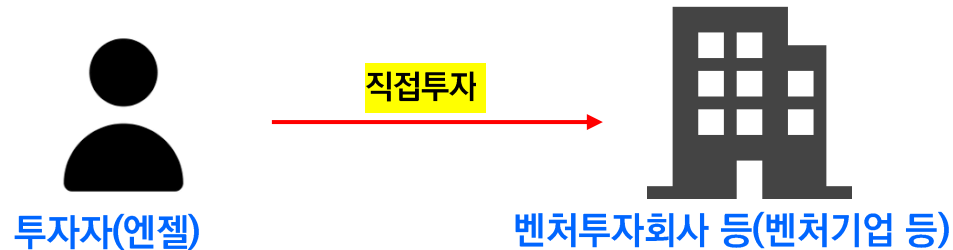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 기타주주

*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지배회사 등

**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간주

Chapter 3 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

창업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1) 출자 요건 (단, 1~4의 경우 구주 취득은 제외)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30을 한도)

*2) 엔젤투자의 경우 별도의 요건 : 특수관계가 없는 다음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 3년 이상 보유

- ①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포함)
- ②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등への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에 대한 요건 :

1. 특수관계가 없는 다음의 기업에 대한 투자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②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
- ③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2. 3년 이상 보유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3 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

창업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
2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포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3년 이상 보유 (단, 특수관계 없는 ①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포함) ②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6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7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대주주 제외)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8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원천징수의 시기에 대한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제7항)

1.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 ①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 ③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 ④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3. 상기 1.과 2.의 배당 및 이자 소득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 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4.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증권거래세의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삭제 <2020. 2. 11.>

2의4.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제2호·제2호의 2·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4.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적용시한 : 2025년 12월 31일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례3)

거주자 홍길동이 취득가액 5천만원의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1.5억원에 타인에게 양도함
(증권거래세 및 기타소득공제 및 감면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 소액주주 세율 10% 가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일 경우

양도소득금액 : 1.5억원(양도가액) - 5천만원(필요경비) = 1억원

양도소득세납부세액 : 1억원 X 10% = 1천만원(지방소득세 10% 별도)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해당하는 투자일 경우

양도소득세납부세액 :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없음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_중소벤처기업부 고시

1. 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

신청자	신청방법	비고
개인	투자한 벤처기업등의 대표자를 통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	벤처기업등의 폐업 등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 가능
개인투자 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	

- *1) 투자확인서 발급 시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2)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투자확인서를 관할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4 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_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계속

2. 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

- (1)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류가 관할을 달리하여 접수되었을 경우, 접수된 신청서류를 관할 확인기관의 장에게 이송
- (2)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 보완요구에 적합한 회신이 없는 경우 반려가능
- (3)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의 민원처리기간은 7일 (이송 및 보완요청기간은 불산입)

3. 투자일자의 적용기준

- (1)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일자는 피투자벤처기업등의 등기부등본상의 증자일자 (단,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의 투자는 계약 체결과 투자금 납입이 완료된 일자)
- (2) 예비벤처기업의 투자일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 일자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4 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_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계속

출자 및 투자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자 (투자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 :)		
제출처	[]원천징수 의무자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자조합	⑦ 소재지(주소)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출자(투자)금액명세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⑩ 출자일 (투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⑪ 출자금 액 (투자금액)	⑫ 투자일	⑬ 투자기업명	⑭ 투자금액	
	⑪ 투자 구분	⑫ 조합명 (위탁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⑬ 계좌 번호					
. .					. .			
. .					. .			
. .					. .			
. .					. .			
계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⑪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⑭란은 적지 않습니다.

3. ⑭ ~ ⑮란은 개인투자조합·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5 Tax의 개관

1. 국세부과의 원칙

- 실질과세 :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경우 귀속자에게 과세,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과세
- 신의·성실 : 납세자 의무 이행과 세무공무원의 직무 수행 시 신의·성실
- 근거과세 : 누락 및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외에는 장부에 의해 과세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조세감면의 취지 성취, 국가정책 수행에 필요

2. 세법적용의 원칙

- 세법해석의 기준·소급과세 금지 :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따라 납세자에게 부당한 침해 금지. 법개정 또는 해석이나 관행 변경 시 소급 과세 금지
-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
-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 세법의 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

3.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원칙 5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 등으로 국세포탈, 환급·공제 등 : 10년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15년)
- 법정 신고기한 내 무신고 :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 상속세·증여세 : 원칙 10년 (부정행위 등으로 포탈, 무신고, 거짓신고 및 누락신고 등의 경우는 15년)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5 Tax의 개관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원칙 5년, 5억원 이상 국세의 경우 10년

5.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 경정 등의 청구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2014.12.23 개정)
- *) 기한 후 신고 :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6. 심사와 심판

- 이의신청 : 90일 이내, 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
- 심사청구 : 90일 이내, 국세청
- 심판청구 : 90일 이내, 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 90일 이내, 행정법원

7.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20% /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 Max(20%, 수입금액의 7/10,000) / (부정행위 2배 중과)
-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 10% (부정행위의 경우 중과)
- 납부지연가산세 : 일 0.022% (1년 8.03%)
-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연 3.5% (2024. 3. 22. 이후)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5 Tax의 개관

8. 세무조정

-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된 재무제표를 과세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
- 수익 vs 익금
- 비용 vs 손금

9. 법인세 : 순자산 증가설

- 법인세 : 2억 이하 9%,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억 초과 3천억 이하 21%, 3천억 초과 24%
-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 10%~40%
 - *) 지방소득세 10% 별도

10. 소득세법 : 열거주의

- 종합소득세율 :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 주식 양도소득세 : 비상장 / 상장기업의 대주주 및 소액주주의 장외거래
 - * 주식, 신주인수권 : 과세 / 전환사채 : 비과세
 - *) 지방소득세 10% 별도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5 Tax의 개관

11. 부가가치세

- 세율 : 10%
- 영세율 : 재화의 수출 /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다만, 해당 목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가. 창업기획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나.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 제1항제2호 : 벤처투자회사 / - 제1항제4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제1항제5호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5 Tax의 개관

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으로 한정한다.

16.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 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Chapter 5 Tax의 개관

12. 상속세및증여세법 : 완전포괄주의

- 세율 : 1억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 *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 : 증여재산가액=시가-대가-3억원 (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 ** VC와 관련된 거래 : 증여재산가액=시가-대가-Min(시가 *30%, 3억원)
-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저가발행의 경우 vs 고가발행의 경우
-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일부주주 지분 소각에 따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는 이익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자와 관련 (3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 특수관계자간 거래 : 0원)
-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5 Tax의 개관

13. 조세특례제한법 : 정책 목적상 여러 가지 조세 지원

- 비과세, 손금산입, 세액공제 및 감면, 준비금 제도 등
- 농어촌특별세 부과 : 감면세액의 20%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17조 비과세)
- VC와 관련된 주요 규정
 -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중소기업 7%, 대기업 17% (과표 100억 이하 10%, 100억초과 ~ 1,000억원 이하 12%)
 - 제143조 구분경리 :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경리
 -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10년

14.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

-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 · 사후관리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5 Tax의 개관

15.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6 벤처(중소)기업의 회계

1. 적용 회계기준 :

- K-IFRS : 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금융지주회사, 금융기관 등
- 일반기업회계기준 : 비상장법인
- ✓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런던 소재 민간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1973년에 제정한 것으로 미국 회계기준(US-GAAP)과 더불어 글로벌 회계기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상환전환우선주
 - 영구채

2. 재무제표 등의 종류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주식, 세무조정계산서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 ✓ 합계잔액시산표

Chapter 6 벤처(중소)기업의 회계 - 계속

합계잔액시산표

201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단위 : 원)

차		계 정 과 목	대	
변	변		변	변
잔	합		합	잔
액	계		계	액
3,652,494,073	35,110,943,154	유 동 자 산	31,477,726,213	19,277,132
3,158,440,343	29,778,487,171	< 당 좌 자 산 >	26,639,323,960	19,277,132
56,670	599,500	현 금	542,830	
1,935,127,116	24,328,715,836	보 통 예 금	22,393,588,720	
	500,000,000	기 타 제 예 금	500,000,000	
12,100,884	12,100,884	정 기 예 . 적 금		
299,806,830	1,647,761,633	외 상 매 출 금	1,347,954,803	
		대 손 출 당 금	19,277,132	19,277,132
3,012,000	35,412,000	단 기 대 여 금	32,400,000	
	204,079,270	미 수 금	204,079,270	
500,000,000	500,000,000	매 도 가 능 증 권		
295,864,259	685,491,432	선 금 금	389,627,173	
13,597,141	22,252,231	선 금 비 용	8,655,090	
	1,426,234,613	주 . 임 종 단 기 채 권	1,426,234,613	
98,319,913	409,801,632	부 가 세 대 금 금	311,481,719	
38,140	38,140	선 납 세 금		
517,390	6,000,000	전 도 금	5,482,610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6 벤처(중소)기업의 회계 - 계속

① 재무제표 의의

- ✓ 재무제표는 기업실체의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재무보고 수단
- ✓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 기업실체의 가정 :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
 - 계속기업의 가정 :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
 - 기간별 보고의 가정 : 기업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

② 재무제표 종류

구분	내용
재무상태표	➤ 일정 시점 현재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 포괄손익누계액 :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산하여 산출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실체에 대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실체에 대한 자본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6 벤처(중소)기업의 회계 - 계속

③ 재무제표의 상호관련성

✓ 각 재무제표는 동일한 거래나 사건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관되어 있음

구분	상호연관성
재무상태표	➢ 기업실체의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재무상태표 정보가 현금흐름표 정보와 함께 이용된다면 유동성 또는 재무적 탄력성을 평가하는 데 더 유용
손익계산서	➢ 기업실체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손익계산서 정보는 재무상태표 정보와 함께 사용될 때 더욱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 익률은 수익성의 기간별 비교 또는 기업실체간 비교의 목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현금흐름표	➢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 ➢ 그러나 동일한 회계기간 내에서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는 것과 달리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은 서로 대응되어 표시되지 않으므로 현금흐름표는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전망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정보가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
자본변동표	➢ 자산, 부채, 자본 변동의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다른 재무제표 정보와 함께 사용되어야 그 유용성이 증대된다. 예를 들어, 주주에 대한 배당은 손익계산서상의 이익과 비교될 필요가 있으며, 유상증자 및 자기주식 취득과 배당은 신규 차입 및 기존 채무의 상환 등과 비교될 때 그 정보유용성이 증대될 수 있다.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6 벤처(중소)기업의 회계 - 계속

④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특성과 한계

(가) 재무제표는 화폐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나)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다)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다.

(라)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Chapter 6 벤처(중소)기업의 회계 - 계속

3. 주요경영비율 분석

- ✓ 안정성 지표 검토 :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 ✓ 수익성 지표 검토 : 매출액영업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 ✓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 분석 :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① 안정성 지표

구분	내용
유동비율	산식 : $\text{유동자산} \div \text{유동부채}$ 회사의 지불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석지표
부채비율	산식 : $\text{부채총액} \div \text{자기자본액}$ 기업자본 구성의 안전도, 특히 타인자본 의존도를 표시하는 지표
차입금의존도	산식 : $\text{총차입금} \div \text{총자산(부채 및 자본 합계)}$
이자보상배율	산식 : $\text{영업이익} \div \text{지급이자 비용}$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한 지표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6 벤처(중소)기업의 회계 - 계속

② 수익성 지표

구분	내용
매출액 영업이익율	산식 : 영업이익 ÷ 매출액
매출액 순이익율	산식 : 당기순이익 ÷ 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산식 : 당기순이익 ÷ 총자산(부채 및 자본 합계)
자기자본 순이익율	산식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자본총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산식 : 영업현금흐름 ÷ 총자산(부채 및 자본 합계)

③ 성장성 및 활동성 지표

구분	내용
매출액 증가율	산식 :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영업이익 증가율	산식 : (당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증가율	산식 : (당기순이익 - 전기순이익) ÷ 전기순이익
총자산 증가율	산식 : (당기총자산 - 전기총자산) ÷ 전기총자산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6 벤처(중소)기업의 회계 - 계속

4. 비재무사항 분석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검토
- ✓ 소송중인 사건 검토
- ✓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내역 검토
- ✓ 영업양수도 및 합병 등 검토
- ✓ 재무상태표일 이후 발생한 중요 사건 (유상증자, 추가차입, 합병 등) 검토
- ✓ 계속기업 검토
- ✓ 기타 특이사항 검토

5. 산업별 분석

- ✓ 개별산업 또는 관련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산업의 특성과 전망)에 대한 분석
- ✓ 개별기업의 경영성과가 당해 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성이 많을 경우, 개별주식의 시가(時價)는 일반적으로 당해 산업의 주가평균과 근사함
- ✓ 모든 산업의 성과가 반드시 경기변동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분석
- ✓ 개별기업의 장기적인 경영성과 전망 시 해당 산업의 추세분석이 도움이 됨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6 벤처(중소)기업의 회계 - 계속

6.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시점 후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예: 주식선택권이 부여된 경우)되거나 발행(예: 주식이 부여된 경우)되기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 1년 내의 기간에 완료되는 용역매출 및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용역제공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등을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할부매출은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따를 수 있다.
-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이익을 할부금회수기일이 도래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6 벤처(중소)기업의 회계 - 계속

7. 벤처(중소)기업의 회계실사 주요 계정과목

(1) 분식회계(粉飾會計)

- ✓ 분식회계 :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조작하는 것으로, 주가 관리, 금융권 관계(대출연장, 신규대출, 이자경감 등), 거래처 관계, 전문경영자의 욕구 등에 의해 분식회계가 이루어짐.
- ✓ 역분식회계 :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 회피, 납품단가의 유지, 전문경영인의 욕구 등에 의하여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함.

(2) 가지급금 vs 가수금

구분	가지급금	가수금
주요 발생원인	✓ 가공 증자 ✓ 가공 매출 ✓ 비용 누락 ✓ 자금 대여	✓ 매출 누락 ✓ 가공 매입 ✓ 자금 차입

*1) 가지급금 : 단(장)기대여금, 주임종단(장)기채권, 주임종단(장)기대여금

*2) 가수금 : 단(장)기차입금, 주임종단(장)기채권, 주임종단(장)기차입금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6 벤처(중소)기업의 회계 - 계속

(3) 기타 사항

가. 대손충당금

- ✓ 대상 : 매출채권, 미수금, 선금금, 대여금 등
- ✓ 연령분석 및 개별분석 등을 통해 회수가능가액을 평가
- ✓ 회계감사기준 vs 세법

나. 감가상각

- ✓ 대상 : 유형자산(Depreciation) 및 무형자산(Amortization)
- ✓ 정률법 vs 정액법
- ✓ 회계감사기준 vs 세법

다. 퇴직급여충당부채 : 회계감사기준 vs 세법

-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라.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발행 여부 검토

- ✓ 상환전환우선주 : K-IFRS 상 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음

마. 스톡옵션 발행 여부 검토

- ✓ 핵심인력에 대한 보상 및 장기 근속 유도
- ✓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는 기업의 비용으로 인식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6 벤처(중소)기업의 회계 - 계속

(4) 자본금

가. 가공 증자(가장 납입)

① 증자대금 미납입 →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 발생

- ✓ 증자대금 납입 후 단기간 내에 인출되는 경우
- ✓ 증자대금이 법인통장에서 입금되지 않는 경우
- ✓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여부 검토 :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 세무조정계산서 등 검토
- ✓ 증자일 전후 법인통장 개관하고 증자대금의 사용내역 검토
- ✓ 가수금을 재원으로 증자하는 경우 가수금의 입금내역 확인 필요

※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제622조제1항에 계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현물출자에 따른 현물평가보고서 검토

- ✓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특허를 현물출자 : 사업과 연관성 및 평가금액의 적정성 검토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6 벤처(중소)기업의 회계 - 계속

나. 차명 이슈 : 증자대금이 납입이 되었으나, 증자대금 납입자와 주주가 상이한 경우

- 증자대금 납입자의 처 명의로 납입된 경우
- 설립 시 대표이사가 전액 납입한 경우
- 유상증자 시 투자자와 대표이사와의 투자배수가 상이한 경우

Chapter 7 투자조합의 Tax 및 회계

(1) 투자조합의 과세이론

- 도관이론 vs 실체이론

(2) 투자조합 결성시의 세무처리

- 고유번호증 발급(세무서)
- 원천징수 위·수탁 계약 체결 :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3) 투자조합 운용시의 세무처리

- 조합의 납세 의무 없음 : 원천징수 의무는 있음
-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확정 신고 시 제출
- 지방세 : 부동산 취득은 허용 안됨. 담보권 행사를 위한 취득 시는 지방세 납부해야 함.
- 관리보수
 -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리보수는 비과세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개인)이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 이자 및 배당소득(적격 투자) 원천징수 :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개인투자조합은 해당 없음

Chapter 7 투자조합의 Tax 및 회계 - 계속

(4) 중간분배시의 세무처리

- 중간분배 방법 결정 : 출자금 반환, 이익배당, 출자금 반환 및 이익 배당
- 분배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실시

(5) 투자조합 청산시의 세무처리

- 잔여재산 분배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실시
-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고유번호증 반납)
- 현물분배 : 각 조합원의 지분율 대로 현물 분배되는 경우 조합원의 과세소득 이슈는 없음

(6) 투자조합의 원천징수 (개인투자조합은 해당 없음)

-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 징수함

a. 배당 소득 : 적격 투자인 경우만 해당

→ 비적격 투자의 경우 피투자회사가 원천징수 vs 투자조합의 환급 여부

b. 이자소득 : 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7 투자조합의 Tax 및 회계 - 계속

(7) 투자조합의 개인LP의 Tax

① 소득공제 : 출자금의 10%

- ✓ 소득공제 대상 투자조합 등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 농식품투자조합은 해당 없음
- ✓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LP의 경우 소득공제 여부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5 (2014.12.10.)	세목	원천
[제 목]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		
[요 지]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등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특정금전신탁 : 업무위탁 이슈 & 특수관계자 거래 이슈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7 투자조합의 Tax 및 회계 - 계속

② 양도세 과세되는 경우

- ✓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개인 LP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세 신고 및 납부

③ 증권거래세 과세되는 경우

- ✓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투자조합이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④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 ✓ 원천징수 특례 적용
→ 개인투자조합은 원천징수 특례 규정 적용 안됨
- ✓ 전환사채 등 주식 전환 시 :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

※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을 절대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7 투자조합의 Tax 및 회계 - 계속

(8) 투자조합의 회계

- ✓ 일반기업회계기준 vs K-IFRS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 원칙 : 공정가치 평가 / 예외 : 취득원가
- ✓ 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 원칙 : 공정가치 평가 (예외 없음)
- ✓ 주요 회계감사 계정 : 투자자산 손상차손(감액),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 ※ 모태펀드 출자 자조합의 경우 모태펀드 자조합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준수
- ✓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 조합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Chapter 8 벤처투자와 관련된 ISSUE

1

투자회사 Valuation

- 본질가치접근법 : 수익가치(미래)와 자산가치의 가중평균
- 현금흐름할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 수익가치(과거 3년)와 자산가치의 가중평균
- 소득세법상 평가 : 수익가치(과거 1년)와 자산가치의 가중평균
- 상대가치에 의한 평가 : PER, PBR, EBITDA 등 Multiple 사용

2

기업가치의 종류

- 계속기업가치 vs 청산가치
- 고유가치 vs 상대가치

3

상환전환우선주 : K-IFRS 상 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음

- 1) 상속세및증여세법 : 완전 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
- 2) 상증법상 규정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그밖의 주식으로 전환 ·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전환사채 등")를 발행하는 법인은 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82조 제6항)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 가산세 1,000분의 2 (상증세법 제78조 제12항)
- 3)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감사합니다

Always Thanks for your interest towards us